

8) 교육공무원 행정처분 또는 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할(한) 경우 (예: 채용 전 성 관련 비위 사실이 드러나거나, 근무기간 중 성 비위 관련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 등)

다. 인력풀에 등록된 기간제교원을 위 ‘나’의 사유 중 “1), 2), 3), 4), 5), 6), 8)”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인력풀 등록을 삭제 처리함

※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계약해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중도계약해지예고통지서(서식26)를 서면으로 안내함.

라. 위 ‘나’의 사유 중 “7)”의 사유로 계약 해지할 경우, 동일교 및 경기도교육청 내의 타 학교에서 채용 공고 없이 임용 가능(계약 해지교에서 당초 계약기간, 계약해지 사유를 명시하여 확인서(서식24)를 발급하며, 계약 잔여기간 경과 후에는 공개채용 절차 거쳐야 함)

불체포 특권

가. 관련 : 교육공무원법 제48조

나. 계약제교원도 정규교원과 같이 교육에 종사하므로 학생교육에 전념하도록 동일하게 적용

수업 결손 방지

결강 등 업무태만의 경우 보수삭감,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, 업무해태로 계약이 해지된 자의 재임용 제한 등 수업결손을 방지하도록 함

교권존중

가. 근거: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및 제43조 제1항

나. 기간제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등 사안 처리 시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지원 가능

신분증 발급

가. 신분증 발급 및 관리

- 1) 기간제교원 신분증 발급은 각급 기관별로 정하여 시행(의무사항 아님)
- 2) 발급 등에 필요한 예산은 각 기관 자체 부담
- 3) 기간제교원 신분증 발급시 기간제교원 자필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받아 발급
- 4) 발급대장 기재
- 5) 임용기간 만료시 반드시 신분증을 회수 처리할 것(회수한 신분증은 폐기 처리, 발급대장 삭제)